

단체실손의료비보험 개인전환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

이 특별약관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 이라 합니다)의 피보험자 등과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단체실손을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상품(이하 ‘전환용 개인실손’ 이라 합니다)으로 전환(이하 ‘개인실손전환’ 이라 합니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합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비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비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합니다.

제2조 (개인실손 전환에 관한 사항)

①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용 개인실손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단체실손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전환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1. 단체실손에 가입한 자인 경우
2.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경우(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며,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단체실손 종료일부터 개인실손전환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함)
3. ‘14.10.16.이후 단체실손을 ‘비실손보장형(정액형)’ 으로 가입한 경우 ‘비실손보장형(정액형)’ 으로 가입한 기간은 단체실손의 가입기간에 포함하며, ’ 19.12.1 이후 개인실손전환 신청 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상품으로 전환직전에는 단체실손(실손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실손 종료일>

개인실손전환 계약자가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이전에 단체실손에 가입·종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실손전환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실손전환 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개인실손전환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수의 회사가 단체실손을 분할하여 인수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의 개인실손전환 청약을 받고, 전환용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전환용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이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단체실손이 전환용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전환 후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전환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또한, 회사가 개인실손전환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⑥ 회사는 계약전환 청약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실손전환을 승낙합니다.
 1.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단체실손의 보험수익자가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수령한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실손보장형(정액형)’ 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
 2.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직전 5년간 10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0대 질병>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
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3. 다음 각 목의 모두에 대해 전환 후 개인실손과 개인실손전환 전 단체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다만, 회사가 개인실손전환 전 단체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재개시점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개인실손전환 전

단체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봄). 단,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계약 인수 지침에 따라 가. 목 내지 다. 목을 적용합니다.

가. 보장종목

나. 보험가입금액

다. 자기부담금

4. 제3호의 나.목, 다.목에서 정한 사항은 재개시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사가 전환용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중지직전에 판매했던 전환용 개인실손으로 전환합니다.
- ⑦ 회사는 제6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자가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제6항 및 제7항 포함), 단체실손과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전환용 개인실손이 전환전 단체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되는 경우 계약전환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개인실손전환 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⑨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때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포함)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전환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전환용 개인실손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3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실손 전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45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 (기타사항)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환용 개인실손의 약관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개인실손전환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